

## [직무기술서 :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]

채용구분	정규직	채용분야	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
<b>분류체계</b>			
대분류	20. 정보통신		
중분류	01. 정보기술		
소분류	06. 정보보호	03. 정보기술운영	
세분류	07. 개인정보보호	03. IT기술지원	
해당직무 주요사업	○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결합전문기관 관리·운영		
능력단위	○ <b>(개인정보보호)</b> 01.개인정보보호 법령·정책 분석, 02.개인정보보호 기획, 07.개인정보보호 감사 ○ <b>(IT기술지원)</b> 01.기술지원 서비스 기획, 05.시스템 개선 대응		
직무수행 내용	○ <b>(개인정보보호)</b> 교육기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술 지원(실무안내서 개발, 교육·컨설팅 등),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지원,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·고도화,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 현장점검 지원 ○ <b>(결합전문기관 운영)</b> 결합신청 및 반출심사 관리, 결합시스템 운영 관리, 전문가 인력풀 관리,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등		
필요지식	○ <b>(개인정보보호)</b>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거법,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·절차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20.8월) 관련 가명·익명정보 개념 및 개인정보 비식별(가명·익명) 처리 요구사항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(기술적/관리적/물리적)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, ITSM 정보시스템 개선 절차 ○ <b>(결합전문기관 운영)</b>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 제한)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(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),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		
필요기술	○ 개인정보보호 법령·정책 분석 및 핵심내용 전달 능력, 개인정보보호 기획·운영 능력,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 방법 및 개선 능력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, 개인정보 비식별(가명·익명) 처리 기술 ○ 비즈니스 목표 분석 능력, IT시스템 운영 능력, 시스템 개선 분석 능력		
필요태도	○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 자세 ○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(가명·익명) 처리 수준 향상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 ○ 고객 요청에 최대한 부합하여 IT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비스 자세		
필요(우대) 자격	○ 법학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우대,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(ISMS-P 등) ○ IT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(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 등)		
직업기초 능력	○ 의사소통 능력, 수리 능력, 문제해결 능력, 정보 능력, 기술 능력, 자원관리 능력, 대인관계 능력, 직업 윤리		
참고사항	○ www.ncs.go.kr		